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가. 의안번호: 20-179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0년 11월 13일(금)

라. 회부일자: 2020년 11월 13일(금)

2. 제출사유

지역 내 채육시설을 거점으로 모든 세대와 계층의 회원이 원하는 운동 종목을 저비용으로 배우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4. 관계법령

-「생활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지원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관련 내용을, 제6조에서는 회계책임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 감독과 보조금 환수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살펴 보건데,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마포구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에 따른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보조금 지급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 제6조(지도·감독)에 보조금을 받는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에 대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자료】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